

언론보도와 정정보도청구권

박용상
판사

I. 서론

1981년 1월 1일 시행된 언론기본법은 언론의 여론형성기능에 공정을 기하고, 언론보도의대상이 된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서구의 반론권 제도를 받아들여 이를 정정보도청구권이란 이름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언론침해에 관한 분쟁을 중재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신설한 바 있다.

동 위원회의 창립 2주년을 맞은 1983년 3월 31일까지 105건에 달하는 언론중재신청사례를 기록하여 언론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점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에 힘입어 학계와 언론계에서는 언론보도와 개인적 법익의 보호에 관해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국민은 아직 정정보도청구권이나 언론중재 제도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언론보도로 권익을 침해당한 사람도 막강한 조직과 영향력을 가진 언론에 대하여 감히 대항할 생각을 못하고 스스로 권리구제의 기회를 포기하는 사례가 일반적인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한편 2년간 운영돼 온 언론중재제도의 실태를 보면 새로운 제도의 의의나 취지에 대한 이해가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무용한 마찰과 감정대립이 야기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 제도가 언론보도에 대한 독자의 모든 불만을 일거에 해결해 주는 것인 양 잘못 이해하거나 제도의 본지에 어긋난 남용의 사례가 보이는가 하면, 언론사측에서는 과거의 권위주의적 타성을 버리지 못하고 진정한 국민의 소리를 외면한 사례도 없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정정보도청구권의 제도적 의의와 행사요건을 밝히고 한국적 현실아래서 요망되는 언론중재제도의 운영방향을 논의하게 된 것은 뜻 깊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하여 ① 언론보도의 기능과 개인적 법익간의 충돌관계 ②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정정보도청구권 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③ 정정보도청구권의 실체적 행사요건과 ④ 예외를 알아보면서 종전 언론중재신청사례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아울러 고찰한 후 ⑤ 언론중재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향에 대하여 평소에 느낀 점을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행하고자 한다.

II. 언론보도의 기능과 개인적 법익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의사의 결정은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통합하여 하나의 결정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자유롭고, 공개적인 여론형성에 의존하게 됨이 물론이고, 언론이 여론형성의 매체 내지 요인으로서 공적 과업을 이행한다고 하는 생각은

현대 헌법학이나 정치학상 이론이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언론이 행하는 공적 과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공적생활의 사태와 과정을 보도하고 논평하는데 있으며, 그 여론형성과정에서 관계인의 비리와 부정을 폭로하고 편견과 독단을 비판하는 언론활동은 그에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 신용, 성명, 초상, 프라이버시 등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가 야기됨을 피할 수 없다.

여기서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법익이라고 하는, 헌법상 보호해야 할 상이한 가치가 충돌관계로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된다. 규범적 · 가치적 관점에서 볼 때 언론의 자유가 아무리 중대한 기능을 담당한다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상 최고의 가치를 의미하는 인간의 존엄을 해하는 언론이 용인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추상적 가치위계관계에서는 이른바 일반적 인격권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의 법익이 언론의 자유에 우월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신문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현대 대중신문의 기업화로 인한 선정주의적 경향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비롯한 성명, 초상, 명예 등 사적 이익의 폭로와 도용을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하고있다. 그럼에도 거대한 자본과 조직을 가진 언론기업과의 관계에서 국민 개개인은 약자의 입장에 있음이 현재의 상황이다. 따라서 언론에 의해 공격받는 개인의 이익보호 내지 권리구제의 구제는 현대 신문학이 당면한 중요한 문제로 논의되게 되었고, 법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개인의 구제절차가 실정법적으로 강구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종래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서는 일반법제상으로도 명예훼손이나 신용훼손 등을 처벌하는 형사적 제재나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또는 사죄광고청구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기존 제도는 언론측의 주관적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와 피해자측의 손해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입증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소송절차의 시간적 지연성 때문에 충분한 구제수단이 되지 못하였다. 더구나 한국의 현실에서 일제와 독재에 항거하여 온 한국언론의 역사적공적과 권위때문에 언론이 야기한 개인의 법익침해는 관대하게 대해져 왔으며, 법 집행의 관행도 이러한 일반적 경향을 반영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언론구제에 대한 적절한 구제제도의 실정을 헌법적 차원에서까지 논의하게 되었으며, 제 5 공화국 헌법이 그 구제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된 것도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헌법상의 요청에 따라 언론기본법에 새로이 규정된 것이 정정보도청구권제도이며, 이로써 언론과 시민간의 관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III. 정정보도청구권의 제도적 의의와 성격

언론기본법이 규정한 정정보도청구권은 요컨대 언론의 보도사항에 이해관계를 갖는 개인이 자신의 말을 무료로 보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이것은 종전의 신문윤리위원회나 방송심의위원회의 정정결정과는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들 결정은 보도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전제로, 언론사로 하여금 그 시정을 권고 또는 강제하는 것인데 반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아니한 채 피해자 자신이 작성한 문안을 그대로 보도해 줄 것을 청구하는 관리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언론기본법이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독일에서는

반론권, 프랑스에서는 응답권 또는 반박권이란 표현이 쓰여지고 있다.) 정정보도청구권이 새로 인정됨에 따라 피해자는 자기에 관계된 보도를 행한 언론사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게 되었고, 언론사로서는 스스로 야기한 쟁점에 관하여 상대방의 언론의 자유를 위해 그 지면을 할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권리가 인정되는 근거는 두 가지 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론이 특정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 받은 개인에게는 신속 적절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이 주어져야 함이 헌법상의 요청이기 때문에 보도된 매체자체를 통하여 공격 내용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방어 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반론권 제도는 이러한 헌법상의 요청에 가장 잘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이 제도는 진실발견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된다는 점이다. 독자는 언론이 시간적 제약아래 일방적으로 수집공급 하는 정보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반대주장까지 들을 수 있어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청구권은 「형식적 권리」로서의 특징을 갖는다고 말해진다. 즉, 정정보도청구권은 보도내용이 진상인가 아닌가에 상관없이 피해자와의 개별적 연관성만 있으면 인정된다는 점에서 형식적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오보임을 요건으로 한다면 필경 보도내용의 허위성 또는 오류를 조사해야 하는 관계로 그 만큼 시간적 지연이 불가피하게 되고, 결국 신속한 반대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제도의 본지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의 제도적 참 뜻은 구제실현의 신속성과 방어효과의 실효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제의 신속성은 이 권리의 형식적 성격과 신속한 재판절차에 의해 실현되며, 방어효과의 실효성은 언론의 보도(공격)와 대등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시정보도의 기회(방어수단)를 피해자에게 부여하는 제도적 구성(이른바 무기대등의 원칙)에 의해 달성되고있다

IV. 정정보도청구권의 성립요건

언론기본법 제 49 조 1 항은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후 신문, 통신, 방송의 경우에는 14 일 이내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1 월 이내에 서면으로 발행인이나 편집인 또는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에게 정정보도의 게재 또는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언론기본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의 성립요건을 ① 주체 ② 정기간행물 또는 방송의 보도 ③ 사실주장 ④ 개별적 연관성 ⑤정당한 이익으로 나누어 다음에 상술하기로 한다.

1. 주 체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자연인차 법인은 물론이고,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 한 제외할 이유가 없다(민사소송법

제 48 조). 따라서 판례상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고 있는 종중, 교회, 사찰, 등록된 사회단체 등이 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음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실제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일반적 이론에 따라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여러 개체가 보도 또는 비판의대상이 되는 예가 허다하고, 이들 개체가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예문에 법적 구제의 길이 시원적으로 막혀버린다면 법의 충분한 보호는 포기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독일의 지배적인 학설은 정정보도청구권에 있어서는 당사자 능력이론의 적용을 완화하여 그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자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정은 다를 수 없다.

따라서 사회생활에서 하나의 활동단로 특정할 수 있는 인적 결사라든가 영조물(학교, 유치원, 병원 등)도 이를 운영하는 법인과 별도로 이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정소송법상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 뿐 아니라 공사법인의 독자적 기능을 갖는 기관이나 조직(예컨대 각종 위원회)도 그 이름으로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해석할 필요성은 종전의 언론중재신청사례에서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82 서울중재 1에서는 공연윤리위원회가, 82 서울중재 20에서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식회사의 의류도매상가 상조회가, 82 서울중재 17에서는 한국 심신장애 자선도선교협회의회가, 82 서울중재 26에서는 복지중학교가 각각 신청인이 되어 언론중재를 신청하였으며, 이들 신청인은 법원의 정정보도 명령신청에 있어서도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어야 할 사례라고 생각된다. 다만 이와 같이 당사자능력을 확장하는 데는 그들에게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킴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정보도청구를 함에 있어 대표자로 서명한 자 개인에게 또는 그 사용자 책임을 추궁하는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2. 정기간행물 또는 방송의 보도

정기간행물이란 신문, 통신 및 년 2 회 이상 발행되는 간행물을 말한다. (법 제 5 조 2 호)이들의 제도에 관한 한, 그 편집형식이나 공표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주장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언론사 소속원이 작성한 내용이든, 외부인사의 청탁에 의한 게재물이든 상관없다. 사외인사의 기고물이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된 대표적 예로는 「전환기의 내막」이란 연재물에서 ○모 변호사가 집필한 국회프락치 사건에 관한 게재가 문제된 81 서울 중재 14 가 있고, 웃돈을 주었더니 전파가설이 되는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의 독자투고가 문제로 된 82 서울중재 9 가 있다. 또 중문을 풍문이라 하여 보도했다거나 지 정보원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하더라도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됨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통신이 보도한 사항을 신문이 정보원을 밝혀 전제한 경우 신문에 대하여도 정정보도청구권이 행사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 일이 있었다. (81 부산중재 2 ; 체벌과 교권침해사건, 81 서울중재 18;농협대출사건)신문이 권위 있는 통신사의 보도를 전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로 인하여 민사상의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책임을 추궁 될 수는 없지만, 정정보도의무까지 면제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정정보도청구권제도는 신문보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관련성이 있으면 성립되는

것이며, 무기대등의 원칙상 피해자가 당해 공표매체에 의한 반론을 할 수 없다면 그 구제효과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광고로 게재된 내용에 대하여도 정정보도청구가 허용되는가에 관하여는 학설상 다툼이 있으나, 광고는 언론이 대가를 받고 광고주의 사적인 주장을 게재하며 주는 것이며, 광고의 직접적 목적은 여론 형성과 무관하기 때문에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광고에 의해 피해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대주장의 광고게재를 의뢰해 오는 경우에는 유료의 게재를 해주는 것이 언론의 도의적책 임에 속할 것이다.

81 서울중재 9(기독교신보광고사건)와 81 서울중재 10(크리스찬신문광고사건)은 위 양지에 게재된 광고에 대해 정정보도청구가 행해진 대표적 사례였다. 후자의 사안을 보면 후암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산하 수도노회측과 중서울노회측 간에 노회소속에 관한 다툼이 있었던 바, 목사 H 모씨를 중심으로 한 신도가 종전 수도노회에 속하였던 후암교회를 중서울노회로 소속을 옮기자, 수도노회측은 H 모씨에 대하여 목사 면직처분을 행하고 그 요지를 1981년 7월 4일자 크리스찬신문에 공고하였다. 이에 대해 중서울노회측은 7월 6일자 동지 광고란에 후암교회는 중서울노회소속이며, H 모목사는 후암교회의 담임목사라는 취지의 해명광고를 게재하였다. 후암교회가 수도노회 소속임을 주장하는 신청인이 위 광고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를 하면서 언론중재를 신청한 것이 이 사건의 내용이었다. 앞서 본 이유 이외에 보도내용과 신청인사이에 후술하는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점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 정정보도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3. 사안적 주장

1) 의의

언론기본법은 보도내용이 사실적 주장인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평, 논평 등 의사표현 내지 가치판단 사항에 대하여는 아무리 관계인에 대한 영향이 크다 할지라도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사실주장이냐, 의견표현 내지 가치판단이나를 구별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독일의 학설과 판례는 사보주장의 징표로서 다음의 3가지를 들고 있다. 먼저 보도내용이 증거에 의한 심사가 가능하여야 한다. 즉, 사실주장은 그 진위가 문제된다는 점에서 당·부당이 문제되는 의견표현과는 구별된다. 둘째로는 객관적인 해명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주관적인 의견이나 개인적 가치평가와는 상이한 성질을 갖는다. 셋째로는 행해졌거나 행해지고 있는 사항에 관한 것이란 점에서 역사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징표들만으로는 구별이 용이하지 아니한 때가 많다. 보통의 경우 사실보도에는 보도자의 주관적 의견이 가미되거나 의견표현은 일정한 사보를 근거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어쨌든 보도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사심없는 일반독자나 시청자가 받는 인상을 기준으로 해야하고, 보도내용의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그 핵심이 사실보도에 있는가 아니면 개인적,

주관적 의견이나 평가에 있는가를 가리지 않으면 안될 것이지만, 그래도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권자에 이익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함이 독일의 학설이다. 다만, 정책의 비판이나 정책에 대한 의견의 표현 등 정치적 논쟁의 표현은 개인의 세계관이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실주장이라고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2) 사실 주장인 경우

성질상 외부적으로 인식이 가능한 사건, 상태, 속성에 관한 보도가 사실 주장임에는 의문이 없고, 사람간, 물건간, 또는 사람과 물건간의 관계에 대한 언급도 원칙적으로는 사실주장에 속한다. 정신생활의 내부과정 예컨대 목적, 의도, 희망, 감정, 태도, 동기 등도 그것이 외부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에는 증거에 의한 접근이 가능하므로 그에 관한 주장도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미래의 사실에 관한 언급은 증거에 의한 심사가 불가능하므로 원칙상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그것이 현재의 정황이나 내심의 사실에 의해 확정될 수 있으면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독일의 관례에는 한 기업의 주식판매보도에서 그 회사의 배후에는 재계의 실력자가 있고, 곧 발행될 그 회사의 주식은 자본시장에서 주가가 상승하게 될 것이니 이를 산사람은 전매시에 높은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미래사실의 보도에 대하여 그 보도내용은 현재 그 회사는 자본상태와 수익이 양호하며 자본시장에서 유리하게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제시된 주가는 현재의 시세에 상당한다는 현재의 사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를 반박하는 반론청구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

보도내용이 보도기관 자체의 주장이 아니라 타개인이 한 말을 대상으로 한 경우 그 발설자는 그 인용보도의 내용이 자기의 발설내용과 다른 경우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종전의 언론중재신청사례에서 보도의 사실주장이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된 대표적인 케이스를 살펴본다. 81 부산중재 1(아파트건설업자 사기사건)은 「무주택 40명 1억원 피해」라는 제하에 부산의 모 아파트업자(신청인)가 40명의 분양계약금 1억원과 시공업자의 공사대금 5천만원을 떼어먹고 달아나 피해를 입혔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신청인은 그가 건설중인 아파트는 99세대 중 13세대만이 분양되어 계약금 8천 3백만원 가운데 2천 3백만원은 대지구입비로, 6천만원은 건설비로 투입되었으며, 시공업자에 대하여는 3천 3백만원의 채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 사례였다. 81 서울중재 18(농협대출부정사건)은 C모씨가 음성군 농협에서 적금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서주기 위하여 N모씨가 인감증명과 인장을 건네주었는데 후에 N모씨 앞으로 2백만원이 대출되어 있다고 하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신청인(농협)은 N모씨가 직접 무인하고 2백만원을 대출해 갔으며 대출절차에는 아무 하자가 없었다고 정정보도를 청구한 것이었다. 81 서울중재 2(여고생 봉욕후 투신사건)에서는 모 여고생이 20대 불량배에게 4층 옥상에서 욕을 당한 후 이를 비관하여 투신자살하려다가 중상을 입고 입원 중이라는 보도에 대하여 신청인(여고생의 모)은 불량배를 피해 달아나다가 옥상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을 뿐 욕을 당한 일은 없다고 주장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3) 사실주장이 아닌 경우

비방, 비난, 감정의 표시 등 개인적 의견이나 주관적 판단 또는 가치평가의 표현, 가정적 표현, 예측적 표현 등은 그것이 객관적 사실을 포함하지 않는 한 사실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또 학문상의 학설, 전문가의 감정결과는 증거에 의한 접근이나 객관적 해명이 불가능하므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언론중재신청사례 중에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보도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된 예로는 학술강연회에서 독도가 서양인에게 처음 발견된 연대와 경위(81 서울중재 1), 광개토대왕대의 고구려 영역을 밝히는 지명과 위치(서울중재 4)에 관한 강연내용 발췌보도가 틀렸다고 하여 이를 바로잡고, 강연에서 인용된 독도에 관한 문헌은 신청인의 학위논문 수록되어 있으므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된 사건과 일본측이 독도영유권주장의 근거로 삼는 1905 년의 일본정부의 조치는 일본각의의 독도취득결정이 아니라 일본정부가 독도에서 고래잡이를 허가한 출어허가라고 주장하여 정정, 보도청구를 한 것이 있다.(서울중재 11)

일반적으로 말하여 다큐멘터리가 사실주장이고 픽션이 사실주장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러나 실재인물을 모델로 한 이른바 모델소설이나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극적 효과를 가미한 이른바 다큐드라마(docudrama)의 경우에는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 소설이나 드라마가 기초로 한 인물 또는 사실에 대한 묘사가 일반독자에게 왜곡된 인상을 주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적 책임을 야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작가의 세계관에 따라 착색된 문학적 표현이라면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실주장이 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4) 보도된 사실주장의 진실여부

전술한 바와 같이 보도내용의 진보여부는 정정보도청구의 요건으로서 문제되지 않음에 주의를 요한다 보도내용이 허위 또는 오류임을 요건으로 삼는다면 그 진위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만큼 권리구제는 지연될 것이므로 신속한 반론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는 상실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정보도청구권이 형식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이같이 보도내용의 실질성 즉, 진실여부에 상관없이 성립하는 권리란 점을 말하는 것이다. 주의를 요하는 것은 보도내용이 진보인 여부를 요인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정보도청구인은 그 내용이 진위 또는 오류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후술하는 정당한 이익을 인정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보도내용의 진실성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경우 그 권리행사가 거부된다는 점에서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법 제 49 조 3 항 단서).

4. 보도내용과 피해자간의 개별적 연관성

언론기본법은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라고 규정하여 보도내용과 피해자간의 「개별적 연관성」이 요구됨을 명백히 하고있다. 따라서 보도내용과 피해자의 법적으로 보호 받는 고유한 이익 영역간에 일반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족하지 않고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요한다. 흡연자, 음주자 전반에 대한 비난적 보도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개별적 연관성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도 제한적이지만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적지않다.

정당, 회사, 협회 등과 그 소속원간, 학교과 학생간, 친구간에는 어느 일방에 관한 보도에 대하여 타방의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할 연관성은 부인되지만(이점에서 신례원리 산림계원의 도벌보도가 문제된 81 서울중재 17 사건에서 개인 S 모씨가 신청한 중재신청은 문제시 된다.) 예컨대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교호가 불충분하였다거나, 처에 대한 비난적 보도에 있어서는 부모나 남편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81 서울중재 2 : 여고생 투신사건과 81 부산중재 2 : 체벌과 교권침해사건은 모두 부 또는 모가 그 이름으로 청구한 예였다.) 사자에 대한 보도에 관해서도 유족에게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81 서울중재 15 : 기구한 무기수사건 및 81 대구중재 1 : 아내 죽이고 투신자살사건), 역사적 인물에 대한보도는 자기와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를 선조로 봉사하는 종중 명의로 청구하는 때에는 그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관성의 요건은 보도에서 특정인의 성명이 지적된 경우 막바로 이를 인정할 수 있지만, 성명이 명기되지 않았거나 가명 또는 두문자만을 표시한 경우에도 사심 없는 독자가 읽을 때 받는 인상을 기준으로 특정인과의 연관성을 인식할 수 있다면 그 요건이 충족된다.

『브라운관의 꽃 일부 여자탤런트 비밀요정 출입 파문』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방송국의 미의 여왕으로 선택되어 탤런트가 된 햇병아리 1양 등을 포함, 30 여명이 방송국과 탤런트협회의 조사대상에 올랐다는 보도내용이 문제된 82 서울중재 2(탤런트 요정출입사건)에서는 해당 탤런트의 성명이 단지 두문자로 표기되었음에 불과하지만 그 서술에 따르면 그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는 사례로서 대표적인 것이었다. 정정보도청구를 하는 신청인은 우선 보도내용이 자기와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은 객관적 사실에 의해 합리적으로 주장함을 요한다.

5. 정당한 이익

(1) 의의

어느 권리에 있어서나 마찬가지로 정정보도청구권도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따라 그 내부적 한계가 설정된다. 언론기본법도 이러한 법정신을 표현하여 정정보도 청구권의 행사에는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법 제 49 조 3 항 단서) 이 요건은 앞서 본 형식적 요건들과는 달리 권리행사의 실질적 요건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정보도 청구권의 형식성을 완화하여 그 행사범위를 현저하게 제한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법규정의 체제로 보아 언론사측에서 정당한 이익이 없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피해자가 바라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경우,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위법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적절한 범위를 초과할 때 등에도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생각되나, 이들 경우는 언론기본법이 예외사유로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후출하기로 한다.(법 제 49 조 3 항 단서, 제 49 조 4 항 및 5 항 참조)정당한 이익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도 사심없는 일반 독자나 시청자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게 된다.

(2)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말하여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로는 인격적 명예나 경제적 신용이 훼손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예컨대 여고생이 욕을 당하고 투신자살을 하였다는 보도에 대해 욕을 당한 일이 없이 피하다가 실족 추락했다고 정정보도를 청구한 경우(전술 81 서울중재 2 : 여고생 투신사건), 이미 살펴본 아파트건설업자 사기사건(81 부산중재 1), 농협대출 부정사건(81 서울중재 18) 등의 경우에 정당한 이익이 인정됨은 물론이다. 그뿐 아니라 피해자 자신의 자기인식 또는 인격상이 왜곡된 경우에 독자들에게 야기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 예컨대 인기 여가수와 동거하게 된 H 모씨에 대해 심영도사라는 칭호와 함께 전처와의 이혼, 여가수의 동거경위, 동거 후의 품모변화 등 사생활에 대한 기사가 왜곡되게 표현되었다고 정정보도를 청구한 경우(81 서울중재 7 : 여가수 동거인사건), 『탤런트 E 모 유부남 병원장과 룸싸롱 데이트』란 제하에 여자로서 무방비 상태로 유부남과 춤을 즐긴다는 등 사생활 폭로기사에 대하여 단순한 사고관계에 불과하다고 정정보도를 청구한 경우(82 서울중재 4 : 탤런트 데이트사건), 『욕지거리 노래 취입하는 전 모 그룹 대표 L 모씨』라는 제하에 요청을 받은 일도, 협의한 일도 없는 가요취입을 약속했다가 도중하차 하였다는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한 경우(82 서울중재 8 : 옛날 옛날사건)등에 정당한 이익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도 피해자의 고유한 인격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정정보도의 청구는 그 성질상 전의 보도내용이 진실에 반한다는 주장과 함께 보도내용과 상반 또는 모순되는 내용을 정정보도문으로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 통상의 경우(이른바 대립적 반론권)이겠으나, 보도내용이 불충분하여 그에 의해 독자들이 받은 불충분하고 그릇된 인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충적 내지 추가적 내용의 정정보도청구」도 정당한 이익을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82 서울중재 5(시민법정-택시합승사건)을 들 수 있다. 모 TV의 택시합승을 주제로 한 「시민법정」프로에서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소속 연구위원으로서 출연교섭을 받은 신청인은 변호인측 증인으로 출연하여 택시운전기사의 입장에서 ① 택시합승의 부조리 ② 합승행위의 원인 및 ③ 그 시정책에 관하여 발언했는데, 실제 방영 시에는 택시합승의 부조리에 대한 발언부분만을 방송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은 변호인측 증인으로 출연한 의의가 상실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발언부분도 방송하라고 청구한 것이다. 대립적 정정보도와 보충적 정정보도가 혼합되어 청구된 사례로서는 81 부산중재 2(체벌과 교권침해사건)을 들 수 있다. 선천성

정신질환자인 신청인의 아들(중학교 1학년)이 체육교사 L 모씨로부터 뺨을 맞아 정신이상을 일으켰다고 신청인이 L 모씨를 폭력으로 경찰에 고발 무고하고 6개월간 치료비를 물게 하여 L 모씨가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하여 신청인은 L 모교사가 학생들에게 과도한 체벌과 괴롭힘을 가해왔고 소변 후 5분 늦은 신청인의 아들을 5차례 뺨을 때리고 급우면전에서 노래 부르기, 물구나무서기 등 가혹하게 대하여 그 아들이 정신이상증세를 일으키고 그 때문에 신청인은 200여만원의 치료비를 자비로 충당해 왔으며 학교로부터는 41만원 밖에 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언론의 취재 및 보도 태도는 정정보도청구가 정당한 이익을 갖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립되는 이해관계자가 있는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만을 취재하였기 때문에 타방 당사자의 이익이나 입장이 무시된 경우 그 반대당사자의 정정보도청구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실제의 언론중재신청사례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다. 살인죄로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중인 무기수의 무죄주장 보도에 대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청구한 경우(81 서울중재 15: 기구한 무기수사건), 아내를 죽이고 투신자살한 남편의 유서와 가족의 말만을 취재보도한데 대하여 피살된 아내의 유족이 청구한 경우(81 대구중재 1: 아내 죽이고 자살사건), 법원에 계속중인 철거소송에 관하여 피고측 주장만을 취재 보도하여 원고측인 신청인으로부터 정정보도가 청구된 경우(82 전남중재 1: 마이크출동-철거소송사건), 민·형사상 사건으로 20여 차례 분쟁돼 온 특허권시비에 관하여 일방의 입장만을 취재 보도하여 타방으로부터 정정보도 청구된 경우(82 서울중재 22: 특허권시비사건), 주법 때문에 한국인과 외국인이 포장마차에서 다투다가 싸움이 된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서 한국인측 의견만을 보도하여 외국인이 청구한 경우(82 서울중재 27: 주법 놓고 육탄전사건)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신문보도를 보면 어떤 비위를 보도하면서 그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의 의견이나 변명도 함께 취재 보도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는 데 이것은 언론이 공정한 보도를 하려 한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후일의 정정보도청구 등 기사에 대한 불만을 미연에 해소하는 보도태도로서 바람직하고 현명한 경향이라고 생각된다. 한 보도내용이 수인에 관계된 때 중복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 2의 청구자는 제 1 청구에 의해 이미 실현된 범위 내에서는 정정보도청구의 이익이 없으나, 새로운 사실까 관점에 관해서는 그 이익이 인정된다.

(3) 정당한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

그러나 ① 지엽말단적인 오보의 경우 예컨대 화재사건 보도에서 높이가 20미터인데 25미터라고 보도된 경우 또는 살인사건 보도에서 피의자의 나이가 30세인데 31세라고 보도된 경우와 같이 보도의 본질적 핵심내용에 관계없는 오류는 정당한 이익을 긍정하게 할 수 없다. 그밖에 ② 정정보도의 내용이 문제된 보도와 전혀 다른 내용이 없다거나 오히려 이의 대상인 보도내용을 합리화하는 내용인 경우 ③ 정정보도의 내용이 그 자체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④ 인터뷰 등에 의한 충실한 보도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사전동의가 있는 때 ⑤ 언론이 스스로 속보에 의해 앞의 보도를 충분히 정정한 경우 ⑥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한 사실관계와 모순되거나 그 후 피해자의 언동에

배치되어 독자를 기만하거나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경우 ⑦ 원문기사의 내용을 왜곡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 등에도 정당한 이익은 부정된다. 82 서울중재 24(주부발언사건)은 모월간지가 신청인에게 청탁하여 기고한 글을 독자투고로 취급하여 주부 발언란에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그 글은 독자투고가 아니라 청탁에 의한 글이었다는 기사를 보도하라고 청구된 사례였다. 이 문제는 편집자와 기고자 사이의 약정위반 등 언론의 도의적 책임이 야기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정보도청구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V. 정정보도청구권의 예외

언론기본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충실한 사실보도에 대하여는 정정보도청구권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 49 조 7 항), 그밖에 정정보도 청구가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경우를 명시하여 이를 정정보도청구권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1.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경우(법 제 49 조 3 항 단서)

전술한 바와 같이 정정보도청구권은 보도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설사보도내용이 진실한 경우에도 행사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정보도청구권이 신속한 반대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일 뿐 신청인에게 거짓말 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바라는 정정보도문이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경우에 이 권리행사가 배제되는 것은 권리 남용금지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경우」란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가 하는 것이다. 독일의 학설은 ① 공지의 사실에 반하는 경우와 ②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반하는 경우를 그 예로 들고 있다. 공지의 사실이란 예컨대 역사적 또는 시사적 사건이나 경과로서 사심없는 일반독자가 관심만 가진다면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을 말한다. 그 알려진 경위는 종래의 매스컴보도에 의했거나 이미 공표된 연구결과에 의해 일반적으로 공공에게 알려진 것이거나 상관이 없다.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 함은 법원(또는 중재부) 자신이 직무 처리상 지득하게 된 사실을 말한다. 당해 사건의 기록이나 심리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사실은 물론, 타 사건에서 알게 된 사실도 포함된다. 따라서 신청인이 자백하거나 언론사와 신청인 간에 다툼이 없어 증거조사를 요하지 아니하고 확정할 수 있는 사실도 취급할 수 있고, 신청인의 주장이나 진술 자체로부터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진실에 반함을 간취할 수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언론사가 신청인의 정정보도문 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문서를 제출했을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 문서의 진정성립에 의문이 없고 일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신청인이 그 문서내용을 반박하지 못한다면 정정보도청구는 인정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문서의 내용이 다의적 해석의 가능성이 있어 명백하지 못함을 신청인이 합리적으로 주장하면 그 문서는 명백한 진실에 반한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2. 정정보도가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법 제 49 조 3 항 단서)

정정보도청구권은 피해자의 인격이나 신용등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의 필요한 한도내의 반대사실 주장만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정정보도로써 자기 PR 이나 상업적 광고의 목적만을 달성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

3. 정정보도가 위법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법 제 49 조 4 항)

위법한 내용이란 공포 시에 범죄가 되어 처벌받게 될 내용을 말한다. 이러한 사항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편집인이 형사처벌 받게되므로 당연한 예외사유라고 생각된다. 제 3 자에 대하여 범죄가 되는 경우뿐 아니라 언론사 자신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 범죄가 되는 경우도 포함된 바 그러나 피해자가 그 공표에 있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형법 제 310 조)에는 정정보도청구권이 거부될 수 없다.

4. 정정보도의 내용이 적절한 범위를 초과할 때(법 제 49 조 4 항)

먼저 정정보도청구권은 보도내용이 사실주장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정정보도문의 내용도 사실주장에 국한된다. 따라서 정정보도문에도 신청인의 개인적 의견이나 가치평가는 포함시킬 수 없다. 그리고 그 사실적 진술은 이의의 대상이 된 보도내용과 관념적 연관성을 갖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명백히 전달함에 필요한 설명에 국한된다. 다만 불충분한 보도내용에 의해서 전달된 불충분한 인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충적 또는 추가적 진술도 허용된다. (진술한 보충적 반론권의 경우)

VI. 언론중재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언론기본법은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고 언론침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정정보도 청구를 하려는 자는 분쟁된 공표가 있는 후 1 개월 이내에 먼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 50 조) 법원에 정정보도 명령을 신청하기에 앞서 호양에 의한 조정의 절차를 필요적으로 거치게 하고, 그 조정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을 신설한 것이다.

언론기본법이 우리나라에 독특한 언론중재제도를 규정한 이유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언론활동에 대한 충격이나 피해자의 권리남用に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계의 실정에 정통한 자가 위원으로 관여할 수 있으므로 그 분쟁해결에 있어서 언론계의 실정과 고충이 고려될 수 있고, 한편 피해자로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해서 뿐 아니라 특별한 비용없이 권리구제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합리적 운영은 언론사나 피해자 쌍방을 위해서 큰 이점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주된 기능은 정정보도청구사건에 관한 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있다고 생각된다. 언론중재는 법원예의 출소가 전제되는 필수적 전치절차로서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사법권의 일부를 구성한다고도 말할 수 있고, 그 기본적 임무는 중립적인 지위에서 당사자 쌍방의 이해를 조절하여 호양에 의한 명예적 해결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는 분쟁을 다룸에 있어서 언론사나 피해자 어느 일방에 편파함이 없이 언론의 보도기능과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간에 조차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을 규정한 법의 정신을 구현함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언론중재가 중립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은 첫째로 판단주체로서는 평균적인 일반독자의 입장을 표준삼아야 함을 말하고, 둘째로는 당사자 쌍방간에 존재하는 지위의 우열을 감안하여 이른바 「무기대등의 원칙」에 따라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점을 내포한다. 셋째로는 중립성을 추구한다고 해서 한국적 현실에서 요구되는 적극적 역할을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첫째로 정정보도청구권 제도가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적 이익은 일반사회통념이 용인하는 범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언론중재위원이나 법관이 사심없는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 보도내용을 이해하고 권리구제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 일반 독자라 함은 당해 사안에 대하여 무관심한 독자가 아니라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보도를 대하는 경우의 사례 깊은 독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민한 피해자의 신경질적 반응이나 완고하고 양식 없는 신청인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의 남용으로 인하여 바람직한 언론의 보도활동이 제약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로 언론사와 피해자 개개인의 관계에서 볼 때 피해자가 약자의 입장에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며, 이 점이 쌍방을 평등한 입장에서 대파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법적 필요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 실제의 운용에 있어서도 피해자는 막강한 세력을 갖는 언론에 대항할 생각을 포기하는 사례가 일반적이고, 중재신청 후에도 유형, 무형의 압력 때문에 신청이 취하되는 사례를 보면 약자측의 입장을 옹호할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을 간과될 수 없는 것이다. 언론중재신청이나 정정보도명령신청에 의한 사건을 조정 또는 심리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반론효과가 언론보도의 잘못된 영향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무기대등의 원칙상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에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된다.

셋째로 서론 부분에서 말한 한국적 현실은 언론중재위원회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 역할 수행을 기대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 ① 먼저 언론중재위원회는 권리의식에 어두운 국민에게 정정보도청구권 제도와 언론중재제도를 홍보하여 권리구제의 길을 알리는 적극적 역할이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비단 피해자 개인의 권리보호뿐 아니라 언론보도의 질을 높이고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이른바 소비자운동의 일환으로서 정보소비자측의 이익옹호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여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적극 지지 되어야 할 것이다.
- ② 언론중재위원회는 구체적 신청사건에 있어서 신청인에게 권리구제 절차와 방법을 교시하는 등 피해자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정보도청구권에 의한 법적 구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권리요건의 주장과 실현을 전제로 하므로 피해자 개인이 스스로 이러한 권리주장을 실현하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신청서의 작성, 절차상의 요건 등 실무적 차원에서 신청인을 보조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 ③ 사건을 중재하는 중재부의 입장에서든 당사자간에 언론계의 실정을 주지시키고 피해자의 감정과 고통을 충분히 전달하여 상호적 이해를 조성하고, 화해에 의한 명예로운 해결을 달성하는 적극적 자세가 요망됨은 물론이다. 또 종전의 신청사례를 보면 신청인은 정정보도청구뿐 아니라 손해배상이나 사죄광고까지 함께 청구하여 중재신청을 해오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직무가 법적으로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국한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사자간의 일괄타결의 요망을 배척하는 이유로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된 보도에 관한 법적 분쟁의 일괄타결을 도와줌으로써 당사자간에 별개의 절차에 따른 분쟁의 여운이나 번거로움을 일소해 주는 것이 당사자 쌍방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④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언론계 전체의 비판자 내지 옴부즈맨으로서 기대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이다. 언론권력의 과점현상과 제 4의 권력으로 지칭되는 현대의 언론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이러한 역할은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언론기본법도언론침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당해 발행인 또는 방송국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동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법 제 50 조 1 항 후단 및 8 항). 다만 언론중재위원회의 이 권한은 언론에 대한 타율 규제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당한 조사, 연구 및 관련언론사의 해명을 청문하는 등 적법절차를 거쳐 언론이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를 갖추어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 프라이브르크대학(법학박사)
- 저술: 「언론의 자유와 책임」, 「언론과 프라이버시」, 「언론의 자유와 공적 과업」 외 다수
- 현재 대법원재판연구관